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8호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2 5 2 호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2 5 8 호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만의골소공원)	3
○ 공	고 제 1 2 6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4
○ 공	고 제 1 2 6 3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9
○ 공	고 제 1 2 6 4 호 2018년 제5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0호선))	13
○ 공	고 제 1 2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고 시

○ 고	시 제 7 8 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고시	26
○ 고	시 제 7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33
○ 고	시 제 8 1 호 남동구 제3종시설물(공공시설물)의 지정 고시	3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52호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07.26. ~ 2018.09.23. (60일간)
2. 공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비고 (처분확정일자)
청소년 게임제공업 (2017-29)	에스따 빠드레	선O영	성말로 9, 405호 (구월동)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1차 (2018.05.08.)	영업정지1월 (30일) (2018.08.25.~2018.09.23.)	2018.07.25.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

5. 기타사항

- ①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032-453-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58호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7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나. 시행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5-10번지 일원

다.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공고기간 : 2018. 7. 26. ~ 2018. 8. 10.(15일간)

3. 공시송달자

연번	성명	주 소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고(등기번호)
1	김*선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	장수동 46-13 외 1필지	이사감	1899687576906
2	김*옥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	장수동 46-13 외 1필지	주소불명	1899687576913
3	김*선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	장수동 46-13 외 1필지	주소불명	1899687576914
4	김*순	** 히드로코트 윌리엄스빌 뉴욕 ***** 미국	장수동 46-13 외 1필지	수취인불명	EE319745313KR

4. 공시송달 내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개별협의 요청 통지

가. 협의기간: 2018. 8. 20.한

나. 협의장소: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6143)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61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6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7월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7. 26. ~ 8.10. 이후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18. 8.10.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소유주 미상 이륜차 1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230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방로48번길 7-2 우리해물탕앞	18. 7.12.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	2018-00262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북개서로 13 맞은편(황색실선2줄)	18. 6.15.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	2018-00271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구 간석동 282-3 대명미르엘 주차장 내	18. 6.11.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18-00272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구 구월동 1304-25 모래마을1호 어린이공원 옆(노란색이륜차)	18. 6.11.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6	2018-00275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인천 만수동 881번지 어린이공원 근처 족발집앞 웨미리빌라 옆	18. 6.19.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7	2018-00280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논현고잔로 248 논현2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18. 6.1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8	2018-00281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서로186 한국볼타 앞 횡단보도	18. 6.22.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9	2018-00312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구 구월동 1369-19	18. 7. 3.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10	2018-00315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간석동 253-27 대문앞	18. 7. 4.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1	2018-00326	등록번호판없음	CITI100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34-4 앞 노상	18. 7. 9.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2	2018-00331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인천 남동구 수산동 185-32 부근 인도(선수촌사거리에서 구월동길병원방면쪽)	18. 7.1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3	2018-00332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서창동 50-2 번지앞 태평2차아파트 담벼락 밑(빨간색, 청테이프)	18. 7.19.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14	2018-00333	등록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자미상	남동구 서창동 566-2 바로 앞 노상	18. 7.12.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소유자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8-26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14. ○ 견인일 : 2018. 6.15. ○ 보관장소 : ㈜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복개서로13 맞은편
2018-2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21. ○ 견인일 : 2018. 6.11.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282-3 대명미르엘 주차장 내
2018-2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23. ○ 견인일 : 2018. 6.19. ○ 보관장소 : ㈜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881번지 노상
2018-2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21. ○ 견인일 : 2018. 6.11. ○ 보관장소 : 기전산업㈜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1304-25 노상
2018-28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24. ○ 견인일 : 2018. 6.18. ○ 보관장소 : ㈜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논현2동주민센터 내

관
리
번
호

2018-2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5.31. ○ 견인일 : 2018. 6.22.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서로186 한국불타앞
2018-31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 5. ○ 견인일 : 2018. 7. 3.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구월동 1369-19
2018-31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12. ○ 방치장소 : 간석동 253-27 앞
2018-32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19. ○ 방치장소 :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34-4 노상
2018-33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20. ○ 방치장소 : 남동구 수산동 185-32 부근 인도
2018-33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20. ○ 방치장소 : 남동구 서창동 50-2 태평@ 담벼락

관
리
번
호

2018-33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6.25.
- 방치장소 : 남동구 서창동 566-2 앞 노상

2018-23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현장확인일 : 2018. 4.30.
- 견인예정일 : 2018. 5.20.
- 방치장소 : 남동구 담방로48번길 7-2 앞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6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7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7.26. ~ 8. 26.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18. 7.26.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내역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나7028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8-00196	**나7028	라세티 1.5D AT	박*호	앵고개로815번길 22 소재휴먼시아3단지 주차장 (322~323동 사이)	18.5.15.	서울폐차사업소	442-6660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나 7028	라세티 1.5D AT	승용 중형	박*호	66**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 ***동 ****호(은행 동, *****)	저당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15-2005-000177	2005.01.05	1,100,000	
						저당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15-2005-000422	2005.01.21	9,900,000	
						압류	시흥경찰서(031)310-9159)	2007.11.20	교통63310-012082	과태료 체납(200771335047975,40000)
						압류	국민연금공단시흥지사(031-488-27 31~6)	2008.01.17	시흥고객지원팀-	국민연금보험료체납
						압류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031-481-4154	2008.05.23	납부지원2부-64011	체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시흥지사	2008.06.02	자격징수부-1754	건강보험료체납
						압류	인천남구청 ☎032-880-7368	2008.11.28	교통민원91000-43716	주정차위반:200808103875
						압류	시흥경찰서(310-9360,9352,9159)	2009.03.13	교통63310-002558	과태료 체납(200871335059695)
						압류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 ,5168)	2009.05.21	차량관리-16453/09002220	책임보험과태료체납
						압류	시흥차량관리사업소(031-310-5166 ,5168)	2009.05.21	차량관리-16453/09002221	책임보험과태료체납
						압류	시흥경찰서(031)310-9360,9352)	2009.10.13	교통63310-012491	과태료 체납(200971335017026)
						압류	시흥경찰서(031)310-9360,9352)	2009.11.10	교통63310-013872	과태료 체납(200971335029143)
						압류	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300000원]	2010.04.15	차량관리-14812/10000847	정기검사미필과태료체납
						압류	안양시 만안구청 031-389-3365	2010.05.27	건설교통과-10866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7-10-100660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2.09.10	세정과-26123	지방세 체납(☎031-310-3501,3502)
						압류	시흥경찰서	2012.11.23	2012D133502969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570120145041)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3.03.15	세정과-7043	지방세 체납(☎031-310-3501,3502)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 66,5168)	2013.03.21	차량등록-8915	책임보험과태료(20121207058717)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 66,5168)	2013.03.21	차량등록-8915	책임보험과태료(20121207058718)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 68)	2013.10.16	차량등록-33866	책임보험과태료(20130619013026)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 68)	2013.10.16	차량등록-33866	책임보험과태료(20130619013027)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4.06.23	세정과-17675	지방세 체납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4.06.23	세정과-17675	지방세 체납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4.08.08	세정과-4134	지방세 체납(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5.04.03	세정과-9191	45나7028 지방세 체납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4.08	차량등록사업소 - 9135	정기검사지연과태료(20150108000196)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5.07.14	세정과-20099	지방세 체납(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6.02.12	세정과-3716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6.08.08	징수과-150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7.02.07	징수과-3004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7.08.01	징수과-1807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20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8.02.20	징수과-3263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20031-310-3501,3502)
영치	경기도 시흥시	2018.04.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징수촉탁해제에 따른 입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선) 2018년 제5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8년7월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중로 1-10호선 사업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07.27. ~ 2018.08.10.(14일간)
4. 열람내용: “붙임” 과 같음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토지)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종로 1-10호선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장수동	산147-3	임	21*9355.2/ 16364)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배너타인 드라이브 ***	유*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럭키송도 아파트***-**	김*명	가등기
2	만수동	3-123	전	5*11/44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천호동)	이*중		송파세무서, 장실세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압류

의견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2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로 변경
- “「지방재정법」 제77조 “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로 변경

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내용 반영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중 명칭 단순 변경(별표 1호, 2호)
 - “BIS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로 변경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로 변경

4. 자치법규(안)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453-2360, FAX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8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나.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

-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4)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8점)

1)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제1조(목적)-----「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8 조 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을 말한다. 2. ~ 7. (생략)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 ----- ----- 「 지방 회 계 법 」 제 38 조 ----- -----.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 ----- ----- ----- ----- ----- ----- 「 지방 회 계 법 」 제38조----- -----.

관계 법령

「지방회계법」

□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78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18.7.23.)에서 의결, 확정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4,832,106	100.00%	726,464,453	100.00%	28,367,653	3.90%
일반회계	715,873,662	94.84%	687,730,050	94.67%	28,143,612	4.09%
특별회계	38,958,444	5.16%	38,734,403	5.33%	224,041	0.58%
기타특별회계	38,958,444	5.16%	38,734,403	5.33%	224,041	0.58%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250,241	1.36%	10,250,241	1.41%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635,925	1.41%	10,635,925	1.46%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706	0.01%	80,706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129	0.15%	912,088	0.13%	224,041	24.5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000	0.04%	279,000	0.04%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4,163	0.01%	54,163	0.01%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6,522,280	2.19%	16,522,280	2.27%	0	0.00%

세 입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5,873,662	100.00 %	687,730,050	100.00 %	28,143,612	4.09%
100 지방세 수입	117,427,000	16.40 %	117,427,000	17.07 %	0	0.00%
110 지방세	117,427,000	16.40 %	117,427,000	17.07 %	0	0.00%
200 세외수입	52,618,230	7.35 %	50,921,868	7.40 %	1,696,362	3.33%
210 경상적세외수입	37,550,242	5.25 %	37,216,533	5.41 %	333,709	0.9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067,988	2.10 %	13,705,335	1.99 %	1,362,653	9.94%
300 지방교부세	8,594,000	1.20 %	5,000,000	0.73 %	3,594,000	71.88%
310 지방교부세	8,594,000	1.20 %	5,000,000	0.73 %	3,594,000	71.88%
400 조정교부금등	89,529,142	12.51 %	65,379,371	9.51 %	24,149,771	36.94%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89,529,142	12.51 %	65,379,371	9.51 %	24,149,771	36.94%
500 보조금	386,700,836	54.02 %	388,001,811	56.42 %	△1,300,975	△0.34%
510 국고보조금등	271,730,031	37.96 %	276,162,335	40.16 %	△4,432,304	△1.60%
520 시·도비보조금등	114,970,805	16.06 %	111,839,476	16.26 %	3,131,329	2.8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004,454	8.52 %	61,000,000	8.87 %	4,454	0.01%
710 보전수입등	61,000,000	8.52 %	61,000,000	8.87 %	0	0.00%
720 내부거래	4,454	0.00 %	0	0.00 %	4,454	순증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5,873,662	100.00%	687,730,050	100.00 %	28,143,612	4.09%
100 인건비	79,624,256	11.12%	78,747,005	11.45 %	877,251	1.11%
200 물건비	31,496,896	4.40%	29,424,205	4.28 %	2,072,691	7.04%
300 경상이전	485,605,234	67.83%	486,922,881	70.80 %	△1,317,647	△0.27%
400 자본지출	86,707,384	12.11%	62,977,975	9.16 %	23,729,409	37.68%
700 내부거래	1,321,448	0.18%	1,322,171	0.19 %	△723	△0.05%
800 예비비및기타	31,118,444	4.35%	28,335,813	4.12 %	2,782,631	9.82%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5,873,662	100.00 %	687,730,050	100.00 %	28,143,612	4.09 %
010 일반공공행정	48,855,110	6.82 %	36,819,665	5.35 %	12,035,445	32.69 %
020 공공질서및안전	5,333,108	0.74 %	4,715,483	0.69 %	617,625	13.10 %
050 교육	11,994,014	1.68 %	9,625,744	1.40 %	2,368,270	24.60 %
060 문화및관광	11,003,911	1.54 %	8,679,515	1.26 %	2,324,396	26.78 %
070 환경보호	22,719,447	3.17 %	20,449,409	2.97 %	2,270,038	11.10 %
080 사회복지	405,199,546	56.60 %	410,286,107	59.66 %	△5,086,561	△1.24 %
090 보건	17,653,439	2.47 %	18,231,300	2.65 %	△577,861	△3.17 %
100 농림해양수산	3,936,872	0.55 %	3,481,194	0.51 %	455,678	13.09 %
110 산업·중소기업	4,038,509	0.56 %	3,649,935	0.53 %	388,574	10.65 %
120 수송및교통	15,627,932	2.18 %	13,537,102	1.97 %	2,090,830	15.45 %
140 국토및지역개발	53,386,150	7.46 %	44,111,302	6.41 %	9,274,848	21.03 %
160 예비비	26,278,771	3.67 %	24,827,313	3.61 %	1,451,458	5.85 %
900 기타	89,846,853	12.55 %	89,315,981	12.99 %	530,872	0.59 %

세 입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	38,734,403	100.00 %	224,041	0.58%
200	세외수입	6,292,534	16.15 %	6,288,080	16.23 %	4,454	0.07%
	210 경상적세외수입	2,874,800	7.38 %	2,874,800	7.42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417,734	8.77 %	3,413,280	8.81 %	4,454	0.13%
500	보조금	4,155,026	10.67 %	4,044,989	10.44 %	110,037	2.72%
	510 국고보조금등	1,093,162	2.81 %	1,005,132	2.59 %	88,030	8.76%
	520 시·도비보조금등	3,061,864	7.86 %	3,039,857	7.85 %	22,007	0.7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510,884	73.18 %	28,401,334	73.32 %	109,550	0.39%
	710 보전수입등	28,485,102	73.12 %	28,374,829	73.25 %	110,273	0.39%
	720 내부거래	25,782	0.07 %	26,505	0.07 %	△723	△2.73%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38,734,403	100.00 %	224,041	0.58%
100 인건비	323,382	0.83%	323,382	0.83 %	0	0.00%
200 물건비	982,457	2.52%	982,457	2.54 %	0	0.00%
300 경상이전	3,573,597	9.17%	3,457,145	8.93 %	116,452	3.37%
400 자본지출	7,736,220	19.86%	7,336,220	18.94 %	400,000	5.45%
700 내부거래	4,454	0.01%	0	0.00 %	4,454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26,338,334	67.61%	26,635,199	68.76 %	△296,865	△1.11%

세 출 총 괄 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958,444	100.00 %	38,734,403	100.00 %	224,041	0.58 %
010 일반공공행정	168,027	0.43 %	53,300	0.14 %	114,727	215.25 %
070 환경보호	10,635,925	27.30 %	10,635,925	27.46 %	0	0.00 %
080 사회복지	842,962	2.16 %	733,648	1.89 %	109,314	14.90 %
120 수송및교통	16,324,038	41.90 %	16,324,038	42.14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10,664,110	27.37 %	10,664,110	27.53 %	0	0.00 %
900 기타	323,382	0.83 %	323,382	0.83 %	0	0.00 %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7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224번길 8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7-1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7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224 번길	8	2009. 11.16	장아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4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224번길8 기초구간에위치하여8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1외1 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7- 1	2009. 11.16.	당좌라는 옛 마을의 유래를 반영하여 제명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당좌로37-1 기초구간에위치하여37-1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14 외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 길	10- 3	2009. 11.16.	하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하촌로59번길10-3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3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20 외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 길	10- 6	2009. 11.16	하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하촌로59번길10-6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6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 번길	39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915번길39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를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 번길	41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915번길41 기초구간에위치하여41을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번길	21- 17	2012. 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10번길 21-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21-17를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67-2외 2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18- 1	2009. 11.16.	아홉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 하여 제명	2018. 07.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수골로18-1 기초구간에위치하여18-1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7-1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7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14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춘로59번길	10-3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춘로59번길	10-5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춘로59번길	10-6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춘로59번길	10-4	2018.07.24	건물 폐쇄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39	2018.07.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41	2018.07.24	건물 폐쇄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8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7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수현교	남동구 장수서창동	남동구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 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 은 2019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19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부로 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원철도육교	남동구 간석1동	남동구 건설과			
연수교	남동구남촌도림동	남동구 건설과			
이화아파트 보도육교	남동구 간석4동	남동구 건설과			
남동정수장 보도육교	남동구 만수1동	남동구 건설과			
남동관문교	남동구 만수1동	남동구 건설과			
도림보도육교	남동구 남촌도림동	남동구 건설과			
도림초등학교 도육교	남동구 남촌도림동	남동구 건설과			
논현1택지 보도육교	남동구 논현고잔동	남동구 건설과			
논현1택지 보도육교	남동구 논현고잔동	남동구 건설과			
운연동 보도육교	남동구 장수서창동30-1	남동구 건설과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남동구 장수서창동 621-1	남동구 건설과			
신월초교 보도육교	남동구 구월동 1295-7	남동구 건설과			
서창(보차도) 육교	남동구 장수서창동 576-2	남동구 건설과			
논현(보차도) 육교	남동구 논현고잔동	남동구 건설과			
장수지하차도	남동구 장수서창동 652 일원	남동구 건설과			
도림1(보차도)육교	남동구 남촌도림동 75	남동구 건설과			
도림2(보차도) 육교	남동구 논현동 3 일원	남동구 건설과			
논현2택지1 보도육교	남동구 논현동 588-2 일원	남동구 건설과			
장수3교	남동구 장수서창동 763-1 일원	남동구 건설과			
소래초교 보도육교	남동구 논현동 109-85	남동구 건설과			
간석1동 주민센터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	간석1동주민센터			
간석4동 주민센터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4동주민센터			
구월3동 주민센터	남동구 구월3동문화서로 84	구월3동주민센터			
구월4동 주민센터	남동구 구월4동 구월말로 7	구월4동주민센터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남동구 남촌도림동 남촌동로 32	남촌도림동주민센터			
만수4동 주민센터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4동주민센터			
만수5동 주민센터	남동구 만수5동 만경로28번길 3	만수5동주민센터			
만수6동 주민센터	남동구 만수6동 장승남로 47	만수6동주민센터			
남동구청사	남동구 만수6동 소래로 633	남동구 재무과			
차량등록 민원실	남동구 만수6동 소래로 633	남동구 재무과			
의회사무국	남동구 만수6동 소래로 633	남동구 재무과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구 백범로 124	남동구 문화체육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서판로54번길 12	남동구 복지정책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호구포로 292	남동구 복지정책과			